

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

이의신청 사건		사건번호 :
		사건내용 :
신청인	성명(상호)	
	주 소	
피신청인	성명(상호)	
	주 소	
이의신청	요지	
	이유	
		*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
판정서 교부일	년 월 일	※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하자 여부 판정 관련 전문가 의견서 1부	조정등의 비용 (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